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266호

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61호)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7월 3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고시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 이유

- 창업초기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초기판로를 지원, 기술력이 있는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함

2. 관련 근거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4항

3. 주요내용

- 현행 동 고시에서는 창업초기 기업의 범위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변경함

4. 입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
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(☎ 042-481-8918)

* e-mail : jhsong@smba.go.kr

붙임 :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 신규조문 대비표 1부.